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5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18	김정재의원 등 10인	'24.11.7.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4.12.23.)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32	문진석의원 등 10인	'25.6.3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0.)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도로 양도·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서류를 위·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위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위해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7까지로 하고,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 4)의 제목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7조의4)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 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6호의2 중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를 “통합관리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3 중 “제47조의5를”을 “제47조의6을”로 한다.  
제70조제2항제21호의2 중 “제47조의6”을 “제47조의7”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 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 보의 통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p>

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p><u>제47조의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u></p>	<p>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u>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p>
---	---

<p><u>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u>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p> <p><u>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생 략)</u></p> <p><u>제47조의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생 략)</u></p> <p>제6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 (생 략)</p> <p>6의2. 제47조의4에 따른 <u>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u>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p> <p>6의3. <u>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u></p>	<p>----- ----- ----- ----- ----- ----- -----.</p> <p><u>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현행 제47조의5와 같음)</u></p> <p><u>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현행 제47조의6과 같음)</u></p> <p>제67조(별칙)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6의2. ----- <u>통합관리시스템의</u> ----- ----- ----- ----- ----- ----- ---</p> <p>6의3. <u>제47조의6을</u> ----- ----- -----</p>
---	--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1의2. <u>제47조의6에</u> 따른 화물 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 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제출 등을 한 자	21의2. <u>제47조의7에</u> ----- ----- ----- ----- -----
22. ~ 27. (생 략)	22. ~ 2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